

[사 건 명] 행심 2017 - 64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사회봉사 4일(20시간)』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고등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인용하여 『사회봉사 2일(10시간)』
으로 변경하여 처분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09. 06.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사회봉사 4일(20시간)』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고 1학년 □□□□ 학생은 2017. 08. 25. 축구부 동아리 활동 경기
중 2학년인 청구인이 열심히 뛰지 않는 자신을 보고 “아토피 똑바
로 안 뛰냐” 라고 얘기하였다며 동아리 활동 시간이 끝난 후 청구
인에게 반말과 욕설로 항의하면서 싸움이 시작되었고, 2학년인 청구
인은 1학년 □□□□ 학생에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2학년 친구인
이제우 학생에게 ‘아토피’ 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
학생은 자신에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항의하는 과정에
서 서로 욕을 하면서 감정이 상해 싸우게 되었다.

- 나. 1학년 □□□ 학생이 얘기 도중에 2학년인 청구인의 가슴을 밀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청구인도 □□□ 학생의 얼굴을 때렸고, 얼굴을 맞은 □□□ 학생이 청구인을 다시 때리면서 청구인에게 발길질 하면서 욕을 하였다.
- 다. 그후 청구인이 뒤돌아 집으로 가려는 □□□ 학생을 밀치는 동시에 □□□ 학생도 청구인의 얼굴을 때려 청구인이 쓰러졌고 주위에 있던 학생들이 강하게 말리면서 싸움이 종료되었다.
- 라. 2017. 08. 30. 학교폭력전담회의 결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 회부되었다.
- 마. 2017. 09. 0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청구인과 □□□ 학생에게 동일한 처분인 사회봉사 4일(20시간) 처분 조치를 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 가. 2017. 08. 25. 축구부 동아리 활동 경기 후 ○○고 2학년인 청구인이 같은 2학년 친구끼리 축구경기 도중 별명을 부른 것을 같은 학교 1학년 □□□ 학생이 자신에게 별명을 부른 것으로 오해 및 앙심을 품고 청구인에게 욕설과 폭력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 나. □□□ 학생이 욕설과 함께 먼저 청구인의 가슴을 밀쳤고, 이후 청구인이 □□□ 학생의 얼굴을 밀었으나, □□□ 학생은 청구인이 얼굴을 쳤다고 거짓 진술하여 사건 발생 원인을 청구인에게 전가하였다.

- 다. 피청구인은 상충되는 목격자 진술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쌍방폭행으로 사건을 규정하고, 학교폭력 처리 매뉴얼 및 가이드북에 규정된 사안조사 결과의 학부모 통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서 정한 ‘불필요한 갈등 예방’, ‘사안조사 중 자치위원회 조치에 대한 예단 발언 절대 금지’ 사항을 어겼다.
- 라.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전 2017. 08. 28. 한차례 면담만 있었을 뿐 당시에는 목격자 진술 및 충분한 사안조사도 없었으며 당연히 조사결과를 설명 받지 못하였고, 학교폭력위원회 개최에 대한 안내를 유선상으로 담임교사로부터 받았으며, 개최 당일도 대기 장소에서 사안보고 설명을 들은 바 없었다.
- 마.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피해자 진술만 하고 바로 귀가하였으며 사안조사 결과는 처분통지서를 받은 후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
- 바. 학교폭력위원회는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상충되는 진술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고 청구인이 간접증거로 제시한 진단서(오른손 골절 수술로 인해 충격을 가하는 행동을 할 수 없음)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으며, 폭력의 경중, 피해정도, 고의성, 반성 및 화해정도를 개별적으로 심사하지 않고 동일 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하여 □□□ 학생과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을 받는 위법·부당한 결정을 하였다.
- 사. 청구인은 사건 당일 □□□ 학생에게 욕설을 한 것을 이미 사과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 아. 인천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 결과 ‘일부인용’ 결정 되었으며 이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동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이 사건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서와 구두진술, 목격자 진술서를 근거로 쌍방간의 폭력으로 말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에서 얼마든지 쌍방 폭력이 아닌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 나. 사안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아 조사결과를 알지 못하고 학폭위에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나 학폭위에 학부모가 입장하기 전 위원들에게 사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청구인에게도 위원회 개최 전 충분히 설명한 바 있고, 전담기구 사안조사 결과를 문서상 통보하지 않았지만 학폭위 개최 공지 유선통보 시 전담기구 회의결과를 통보하였다.
- 다. 학폭위 간사의 사안조사 결과 보고 시 관련 학생들이 인정하는 사실과 상반된 주장에 대한 보고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간사는 자치위원회에 사전에 사안에 대한 설명을 한 바 있으며 청구인 및 목격자 진술서를 토대로 상반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였다.

라. 2017. 08. 28. 양측 부모가 같이 만나도록 조치해 교육청 매뉴얼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양측 학생에 대한 상태와 폭력사안에 대한 설명과 향후 절차 안내, 두 학생 간 사과와 화해의 기회를 주고자 함에 목적이 있었다.

마. 학폭위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진단서를 충분히 검토하였으나 사안 발생 당일 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하였다.

바. 청구인의 언어폭력으로 인해 사안이 발생한 점, 1차 폭력 발생에서 □□□□ 학생이 청구인의 가슴을 밀고 동시에 청구인이 □□□□의 얼굴을 치면서 싸움이 전개된 점, 2차 폭력은 집으로 가려는 □□□□ 학생에게 청구인이 항의하면서 □□□□에게 다시 얼굴을 맞게 된 점을 고려하여 관련 학생 모두 가해자 및 피해자로 판단하여 동등한 처분을 하였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경찰의 폭력 사안 처리 시에는 쌍방으로 처리한다는 의견이 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다수결에 따라 결정하였다.(동일조치 8명, 서로 다른 조치 1명)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 판 단

가. 인정되는 기초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제출된 증거 포함),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 대한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과 □□□ 학생은 ◎◎고 축구부 동아리 회원으로서, 2017년 08. 25. 2학년인 청구인이 축구부 동아리 경기 도중 “아토피 똑바로 안 뛰냐” 라고 하였고, 평소 아토피가 있던 1학년 □□□ 학생은 청구인이 자신에게 위와 같이 말했다며 동아리 활동이 끝난 후 청구인에게 반말과 욕설로 항의하면서 싸움이 시작되었고, 청구인은 □□□ 학생에게 한 것이 아니라 2학년 친구 이제우 학생에게 ‘아토피’ 라고 한 것이라고 하였지만 □□□ 학생은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며 청구인에게 계속 항의하여 두사람은 감정이 상해 싸우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 학생이 먼저 청구인의 가슴을 밀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청구인이 □□□ 학생의 얼굴을 때렸고, 얼굴을 맞은 □□□ 학생이 청구인을 발길질하면서 욕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뒤돌아 집으로 가려는 □□□ 학생을 밀치자 □□□ 학생이 청구인의 얼굴을 때려 청구인이 쓰러졌고 주위에 있던 학생들이 강하게 말리면서 싸움이 종료되었다.

한편, 2017. 09. 06.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청구인과 □□□ 학생의 쌍방간에 이루어진 학교폭력으로 판단한 뒤, 9명의 위원 중 쌍방간 폭력이기 때문에 동일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위원의 수가 8명이라 다수결에 따라 두학생에게 동일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기준 상 학교폭력의 심각성(3점), 학교 폭

력의 지속성 없음(0점), 학교폭력의 고의성 낮음(1점), 관련 학생의 반성정도 보통(2점), 화해정도 낮음(3점)으로 의견을 종합하여 청구인과 □□□□학생에게 각 사회봉사 4일(20시간)의 동일한 처분 조치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 학생이 욕설과 함께 먼저 청구인의 가슴을 밀쳤고, 이후 청구인이 □□□□ 학생의 얼굴을 밀었으나, □□□□ 학생은 청구인이 얼굴을 쳤다고 거짓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 학생의 진술 외에 이 사건을 목격한 △△△ 학생, ♀♀♀ 학생, ●●● 학생, ◆◆◆ 학생, ■■■ 학생, ♣♣♣ 학생 등 각 목격 학생들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 학생의 얼굴을 쳤거나 최소한 □□□□ 학생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점은 인정되므로, □□□□ 학생이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인 없이 쌍방폭행으로 사건을 규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목격자들의 진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도 □□□□ 학생을 때리거나 최소한 □□□□ 학생을 밀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얼굴을 때리는 행위는 물론 □□□□ 학생의 얼굴을 밀친 행위도 법률상 폭행에 해당하므로 쌍방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절차상 위반에 대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안조사 결과의 통보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청구인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 및 구술 심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문서상으로 통보를 하지는 않았지만 유선으로 청구인에게 학폭위 개최를 통지하면서 전담기구 회의결과를 통보하였고, 학폭위 개최일에 학부모에게 구두로 사안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바, 설령 피청구인의 통보 및 설명이 서면 통지가 아니고,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충분치 않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이를 가지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만큼 학폭위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불필요한 갈등 예방’, ‘사안조사 중 자치위원회 조치에 대한 예단 발언 절대 금지’ 사항을 어겼고, 학폭위 간사의 사안조사 결과 보고 시 관련 학생들이 인정하는 사실과 상반된 주장에 대한 보고절차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 및 구술심리 결과를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위 각 사항 및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3) □□□□ 학생과 청구인의 동일한 처분의 부당성

청구인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이 사건 학교 폭력의 경중, 피해정도, 고의성, 반성 및 화해정도를 개별적으로 심사하지 않고 동일 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하여 □□□□ 학생과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인 사회봉사 4일(20시간)의 처분조치를 내린 것은 위법·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각 증거 및 구술심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청구인과 □□□□ 학생이 이 사건 당시 서로 폭언

과 폭력을 행사한 점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 학생에게 ‘아토피’ 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친구인 이제우 학생을 부른 것이라고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학년인 □□□□ 학생은 2학년인 청구인에게 계속 항의하면서 말싸움이 시작되었고, 결국 1학년인 □□□□ 학생이 청구인을 먼저 밀치면서 폭행이 시작된 점, 이 사건 당시 청구인도 □□□□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지만 싸움 직후 □□□□ 학생은 병원에 갈 정도로 다치거나 외상은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단순 폭행에 그쳤지만 청구인은 □□□□ 학생으로부터 얼굴과 머리 등에 폭행을 당한 후 싸움 직후 응급실로 가 안와골절과 입 안쪽 등이 찢어져 봉합수술 등의 치료를 받는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와좌상 및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통증 등 상해를 당한 점 등이 사건 학교폭력의 경위,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학교폭력의 피해결과가 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기준 상 학교폭력의 심각성의 경우 청구인이 □□□□ 학생보다 높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청구인과 □□□□ 학생에게 동일한 처분조치를 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피청구인이 2017. 9.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사회봉사 4일(20시간)』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학교폭력의 경위, 청구인과 □□□□ 학생간의 관계, 학교 폭력의 피해 결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한 처분을 『사회봉사 2일(10시간)』으로 변경하여 처분한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